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규정 보완 등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7호, '22. 5. 6.)의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고시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캄보디아와의 협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반영

### II. 주요 내용

-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지정 및 세부 절차 규정 (§10, §17, §17의2)
  - 관세청장이 세율차가 큰 물품 등을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 대상 물품\* (이하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마련
    -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정 여부 심사가 부적당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가 가능하도록 FTA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제6조 제1항 제3호 신설, '22. 7. 5.)
  - 사전 협정관세 심사 물품에 대한 수입자 제출서류, 세관장의 심사 기준, 신고수리 전 반출 및 원산지조사 전환 등 제반 절차 규정
-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의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를 고시에 반영 (§28, §34, §35, 별표3)

### III. 의견제출

- 제출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 담당자: 김진선 사무관(042-481-3215), 심성훈 주무관(042-481-3206)
- 제출기한: 2022.11.14.(월)
- 제출방법 : 이메일 (sim307307@korea.kr)
- 제출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 I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붙임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규대조표
- [붙임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 I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32-742-8250  
E djkim@esein.co.kr



정현욱 관세사  
T 070-4353-1523  
E hujung@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2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